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5호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 예고

### 1. 제안이유

환경시설로부터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지원사업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환경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대전광역시 환경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7, FAX 042-270-5039, E-mail : ychml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환경시설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환경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또는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중·고등학교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2.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

4. 환경·안전에 대한 감시활동
  5.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변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3. 지원사업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민 복리 증진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변 지역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

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제5조 관련)

#### 1. 중간처분시설

##### 가. 소각시설

- 1) 일반 소각시설
- 2) 고온 소각시설
-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 4) 고온 용융시설
-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 나. 기계적 처분시설

- 1) 압축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2) 파쇄·분쇄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4) 용융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5) 증발·농축 시설
- 6)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7) 유수 분리시설
- 8) 탈수·건조 시설
- 9) 멸균분쇄 시설

##### 다. 화학적 처분시설

- 1) 고형화·고화·안정화 시설
-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3) 응집·침전 시설
-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 1) 소멸화 시설(1일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2. 최종 처분시설
  - 가. 매립시설
    - 1) 차단형 매립시설
    -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3. 재활용시설
  -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 1)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2) 파쇄·분쇄·탈피 시설(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3)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4) 용융·용해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5) 연료화시설
    - 6) 증발·농축 시설
    -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8) 유수 분리 시설
    - 9) 탈수·건조 시설
    -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반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 1) 고형화·고화 시설
    -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 3) 응집·침전 시설
  -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 가) 부숙(腐熟)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

처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속시설은 제외한다.

나)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다)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마)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3) 버섯재배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

마.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탄화 시설

사. 골재가공시설

아. 의약품 제조시설

자.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비 용 추 계 서

## 1. 의안명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 2.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4조(지원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3.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구즉동) 지원
  - ▷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기타 주민복지증진사업 등

### 나. 추계 결과

- 17,116,706,000원

###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별첨)

### 라. 재원조달방안

- 주민공동이용시설 토지 매입 후 국비확보 방안 강구 추진

4.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5. 작성자 : 자원순환과 지방행정 6급 장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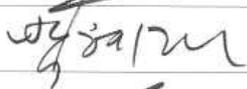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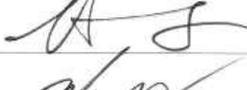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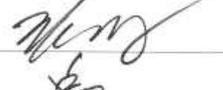
#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937,706	4,555,000	5,068,000	5,078,000	1,478,000	17,116,706	
시비	937,706	4,555,000	5,068,000	5,078,000	1,478,000	17,116,706	
재원 조달							
의 존 재 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 세						
자 체 수 입	소 계	937,706	4,555,000	5,068,000	5,078,000	1,478,000	17,116,706
	지방세	937,706	4,555,000	5,068,000	5,078,000	1,478,000	17,116,70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자원조례안】

발 의 의 원 명 단

연 번	발 의 의 원	서 명	비 고
1	구보환		
2	원종영		
3	박혜리		
4	우승호		
5	김빛봉		
6	채계순		
7	남진근		
8	홍종원		
9	조성원		
10	유애라		
11	이종호		
12	윤용대		
13	문성연		
14	권태권		
15	권영문		